

의안번호	2126480
의 퇴 인	이종배의원
회 답 일	2024.02.21.
추 계 번호	24D01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자녀수당”)에 대해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140억원, 2026년 2,293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 2,344억원, 연평균 2,469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 시, 유족의 보상금 소멸시점에 따른 차등 금지 (안 제16조의3 제3항 단서 신설)	2,140	2,293	2,457	2,633	2,822	12,344	2,469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3 제3항 단서 신설(6·25전몰군경자녀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에 대해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에 따른 차등 금지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3항 단서 신설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 시행령은 유족의 보상금 수급여부, 최초 보상금 수급대상 및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에 따라 자녀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음.
 - 현행 시행령 제27조의3제7항 관련 [별표 5의5]에 따라 유족의 보상금 수급 여부, 최초 보상금 수급 대상(미성년 자녀와 그 외 유족의 구분),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미성년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되는 시점, 그 외 유족의 경우 1998년 1월 1일 전·후)에 따라 자녀수당 수혜대상을 1호부터 4호까지로 구분하고 있음.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는 동액을,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는 제1호와 제2호 자녀보다 적은 금액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음

[표 2] 현행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지급 구분	월 지급액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기본급: 1,613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372천원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516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5]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비용추계에서는 자녀수당 지급 구분별 인원 및 단가 차이를 활용하여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와 법 개정 시 예상되는 재정소요 간의 차액을 추가재정소요로 추계함

- 현행대로 지급구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향후 예상되는 재정소요와 개정안에 따라 지급구분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도 지급구분 제1호 및 제2호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산정하여, 현행과 개정안 간의 재정소요 차액을 추가 재정소요로 추계함
- 제1호와 제2호 자녀에게 지급되는 위로가산금은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미성년이었을 경우 특별히 지급되는 가산금으로 동 재정추계에는 반영하지 않음
- 지급구분 별 지급인원은 국가보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
-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향후 인상률은 최근 5년간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연평균 인상률 4.7%¹⁾을 적용
- 안 부칙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가.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액에 대해 유족의 보상금 소멸시점에 따른 차등 금지(안 제16조의 3 제3항 단서 신설)
- (지급구분별 지급인원)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인원은 2025년 3만 1,026명에서 2029년 3만 3,03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급구분별로 보면, 2025년 제1호 및 제2호 해당인원은 6,124명, 제3호 해당인원은 1만 1,910명, 제4호 해당인원은 1만 2,992명임

1) 최근 5년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률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인상률(%)	5.0%	3.0%	5.0%	5.5%	5.0%	4.7%

[표 3] 당초 기준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구분별 지급인원 추계(2025~2029)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별표5의5]의 제1호, 제2호	6,124	6,205	6,287	6,370	6,454
[별표5의5]의 제3호	11,910	11,967	12,025	12,083	12,141
[별표5의5]의 제4호	12,992	13,341	13,699	14,067	14,444
[별표5의5]의 제4호 중 추가지원금 수급자	858	866	874	883	892
합계	31,026	31,513	32,011	32,520	33,039

주: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녀 간 협의 등에 따라 1인에게 지급하거나 균등분할지급함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2024~2028 중기계획 요구 인원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

- (지급단가) 최근 5년간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연평균 인상률 4.7%를 적용하여 산정한 2025~2029년 지급구분별 지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 당초 기준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구분별 월 지급단가(2025~2029)

(단위: 천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별표5의5]의 제1호, 제2호	1,689	1,768	1,851	1,938	2,029
[별표5의5]의 제3호	1,436	1,504	1,575	1,649	1,726
[별표5의5]의 제4호	540	566	592	620	649
[별표5의5]의 제4호 중 추가지원금 수급자	114	114	114	114	114

주: 최근 5년간 추가지원금 인상은 없었음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2024~2028 중기계획 요구 인원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급구분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도 지급구분 제1호 및 제2호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140억원, 2026년 2,293억원 등 향후 5년간 1조 2,344억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2025~2029)
: 제3호·제4호 자녀에게 제1호·제2호 자녀와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당초 재정 소요 (A)	[별표5의5]의 제1호, 제2호	1,241	1,317	1,397	1,482	1,572	7,008
	[별표5의5]의 제3호	2,053	2,160	2,272	2,391	2,515	11,391
	[별표5의5]의 제4호	842	906	974	1,047	1,125	4,893
	[별표5의5]의 제4호 중 추가지원금 수급자	12	12	12	12	12	60
	합계	4,148	4,394	4,654	4,931	5,224	23,351
개정안 재정 소요 (B)	[별표5의5]의 제1호, 제2호	1,241	1,317	1,397	1,482	1,572	7,008
	[별표5의5]의 제3호	2,414	2,539	2,671	2,810	2,957	13,391
	[별표5의5]의 제4호	2,633	2,831	3,043	3,272	3,518	15,296
	[별표5의5]의 제4호 중 추가지원금 수급자	0	0	0	0	0	0
	합계	6,288	6,687	7,111	7,564	8,046	35,695
추가 재정소요(B-A)		2,140	2,293	2,457	2,633	2,822	12,344

주: 제적자녀에게 지급되는 위로가산금은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미성년이었을 경우 특별히 지급되는 가산금으로 동 재정추계에는 반영하지 않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지급구분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도 지급구분 제1호 및 제2호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하였으나, 유족의 범위 및 보상금 소멸시점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의 보상금 소멸시점을 사유로 자녀수당에 대한 차등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해석할 경우, 제4호 자녀에게 제3호와 동일하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386 억원, 2026년 1,490억원 등 2025~2029년 기간 동안 8,058억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2025~2029)
: 제4호 자녀에게 제3호 자녀와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당초 재정 소요 (A)	[별표5의5]의 제1호, 제2호	1,241	1,317	1,397	1,482	1,572	7,008
	[별표5의5]의 제3호	2,053	2,160	2,272	2,391	2,515	11,391
	[별표5의5]의 제4호	842	906	974	1,047	1,125	4,893
	[별표5의5]의 제4호 중 추가지원금 수급자	12	12	12	12	12	60
	합계	4,148	4,394	4,654	4,931	5,224	23,351
개정안 재정 소요 (B)	[별표5의5]의 제1호, 제2호	1,241	1,317	1,397	1,482	1,572	7,008
	[별표5의5]의 제3호	2,053	2,160	2,272	2,391	2,515	11,391
	[별표5의5]의 제4호	2,240	2,408	2,589	2,783	2,992	13,011
	[별표5의5]의 제4호 중 추가지원금 수급자	0	0	0	0	0	0
	합계	5,534	5,884	6,258	6,655	7,079	31,409
추가 재정소요(B-A)		1,386	1,490	1,603	1,724	1,855	8,058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